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합50803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7. 10. 26.

판결 선고2017. 11. 1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58,527,446원 및 그 중 648,104,651원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7. 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8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금액과 보증기한에 대한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 1차 보증을 '제1보증계약'이라 하고, 2차 보증을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제1, 2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제10조). 2016. 2. 1.부터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1차 보증	2012. 9. 14.	569,500,000	2013. 9. 13.	기업구매자금대출	670,000,000
		(536,000,000) (2016. 11. 25.)			
2차 보증	2012. 11. 29.	270,000,000(242,250,000)	2013. 11. 28.(2016. 11. 25.)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	300,000,000

2) 피고 A은 원고가 발행한 각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2012. 9. 17. 여신한도 670,000,000원, 2012. 11. 30. 여신한도 300,000,000원으로 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돈을 대출받았다(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한편,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과 피고 A이 여신거래로 국민은행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이른바 '포괄근담보' 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바 있는데(이하 아래 표 기재 1차 설정 근저당권을 '1차 근저당권', 2차
설정 근저당권을 '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¹⁾ 이 사건 각 대출채무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었다.

별지 목록 제2항 토지	2007. 10. 25. 설정계약	2007. 10. 26.	8억 4,500만 원	2007. 11. 23. 설정계약	2007. 11. 23.	9억 3,600만 원
별지 목록 제3항 건물	2008. 6. 3. 추가설정 계약	2008. 6. 9.	2008. 6. 3. 추가설정 계약	2008. 6. 9.		
별지 목록 제4항 건물						

나. 보증채무 이행과 담보권 실행

1) 피고 A은 2016. 6. 25. 이 사건 각 대출 원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6. 10. 28. 제1, 2보증계약에 따라 국민은행에
792,144,572원(제1보증계약에 따른 원금 535,640,000원과 이자 9,961,916원 및 제2보증계약에
따른 원금 242,250,000원과 이자 4,292,656원의 합계액)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국민은행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대출 이외에도 4차례 대출을 더
해주었는데, 피고 A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자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1, 2차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26. D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3) 원고는 신용보증 채무를 이행한 2016. 10. 28. 국민은행과 2차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억
3,6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에 상당한 부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계약'을
체결하고(원고와 국민은행은 위 계약서 제2조에서 배당·회수 금액의 총당순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016. 11.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2차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7. 6. 20.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원고는 2017. 6. 29. 국민은행의 피고 A에 대한 대출채권 일체를 양수한 '에프케이 1612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2차 근저당권 일부 이전 금액인 1억 7,000만 원은 원고가 우선 배당받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합의서를 작성하고, 집행법원에 위 배당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2017. 7. 20. 배당금 1,277,870,609원 중 원고가 2순위로 170,000,000원을, 에프케이 1612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3순위로 1,094,468,705원을 각 배당받았다.

5) 원고가 배당받은 170,000,000원은 국민은행과의 근저당권 일부 이전계약에서 정한 총당 순서에 따라 안분되어 원고는 그 중 148,732,081원을 회수하였다. 이와 같이 회수한 돈은 근저당권 일부 이전과 권리 보전 비용 등으로 원고가 지출한 대지급금 합계 5,716,360원과 제2보증계약 대출 원금 중 143,015,721원에 충당되었다.

6) 원고는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한 2016. 10. 28. 1,024,200원을 회수하여 제1보증계약 대출 원금에 충당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합계 10,422,795원[2016. 10. 28. 상환된 1,024,200원에 대한 손해금 280원($=1,024,200\text{원} \times 1/365 \times 10\%$)과 2017. 7. 20. 상환된 143,015,721원에 대한 손해금 10,422,515원($=143,015,721\text{원} \times 266/365 \times 10\%$)의 합계액]이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1) 피고 A은 2016. 2. 18. 피고 B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9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29.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243,6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 2. 29.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23,3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제13, 19 내지 26, 34 내지 36,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제1, 2보증계약의 주채무자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658,527,446원[= 대위변제금 잔액 648,104,651원(= 대위변제금 792,144,572원 - 2016. 10. 28. 상환된 원금 1,024,200원 - 2017. 7. 20. 상환된 원금 143,015,721원) + 확정손해금 합계 10,422,79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648,104,65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7. 7. 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1, 2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갖는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 10. 28.에야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제1, 2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후 실제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갑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헤어날 수 없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연체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파악된다.

(1) 피고 A의 채권자인 E은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30077호로 청구금액 10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6. 3.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위 가압류는 2016. 4. 18. 말소되었다).

(2) 피고 A은 2016. 9. 9. 원고에게 F와의 분쟁으로 주유소 운영조차 어렵게 되었다면서 신용보증사고 발생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실제로 피고 A은 2015. 7. 13. F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6043호로 약 1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시 소송 계속 중이었다(피고 A은 2017. 1. 12. 패소 판결을 받았다).

나) 위와 같이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 액수나 법적 분쟁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사정은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사전구상권 발생의 사유 중 하나인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성립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전구상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다) 한편,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인 피고 B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A의 무자력 갑 제7 내지 10호증, 제13, 17, 27, 3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케이에이치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2. 18.경 피고 A의 자산 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아파트	290,000,000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근저당권부 채무	203,000,000
이 사건 각 부동산	1,281,999,200	국민은행 포괄근저당권부 채무	1,781,000,000(4)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은행에 대한 피고 A의 총 대출 원금만 해도 19억여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6. 2. 18. 당시 국민은행에 대한 피고 A의 대출채무액은 1, 2차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것임이 넉넉히 추인되므로, 위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주유기 7, 지하 유류저장탱크 1, 세차기 1	75,000,000	(주)공항석유상사5) 현재 '케이에이치에너지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근저당권부 채무	214,816,300
		H에 대한 소송비용액 채무6) 갑 제9,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은 인천지방법원 2015카합680호로 피고 A이 위 법원 2014가단67705 판결과 관련하여 H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999,000원임의 확정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 H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소송비용액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하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999,000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90,000,000
합계	1,646,999,200	합계	2,292,815,3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이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 채권 등 위에서 인정된 16억 원 이상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피고 A이 원고에게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더라도 피고 A은 당시 주유소 운영이 곤란할 정도로 재정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은 2015년경 피고 A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A에게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하게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A은 피고 B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면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300만 원을 피고 B이 인수하기로 함으로써 결국 실제 매매대금 상당액인 2억 9,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소명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바 있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A에게 2015. 3. 19. 3,630만 원, 2015. 3. 30. 1,200만 원, 2015. 10. 16. 4,200만 원 합계 약 9,000만 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명의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곧바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억 2,33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6. 5. 31. 위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 해지되고 채무자 피고 A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4,360만 원과 채권최고액 6,96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앞으로 설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B이 정당한 가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들 중 1명인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 A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3) 피고 B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와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6. 1. 11.경 피고 A에게 1억 4,000만 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운영 중인 주유소에 대해 전세보증금 1억 5,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21. 6. 30.까지로 하는 2016. 6. 28.자 계약서를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나아가 컴퓨터, CCTV 네트워크공사 등 설치비용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2015년 금전대여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까지 더해 보면, 피고 B은 당시 피고 A의 재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2억 4,360만 원, 근저당권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6.

2. 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익자인 피고 B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감정인 G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017. 6. 29. 기준 2억 9,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아파트 시가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2016. 2. 29. 당시 2억 300만 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아파트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인 8,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8,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8,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판사김영학

판사박형렬

판사박민지

별지

1)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2008. 6.경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건물이 추가된 후 2008. 6. 4. 위 건물들과 함께 주유기, 지하 유류저장탱크, 세차기 등을 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1차 근저당권은 2008. 6. 9., 2차 근저당권은 2008. 6. 13. 위 2008. 6. 4.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2) 에프케이 1612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6. 12. 22. 국민은행에서 피고 A에 대한 대출채권

일체를 양수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1. 10. 채권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3) 근저당권부 채무의 경우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4)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은행에 대한 피고 A의 총 대출 원금만 해도 19억여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6. 2. 18. 당시 국민은행에 대한 피고 A의 대출채무액은 1, 2차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것임이 넉넉히 추인되므로, 위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5) 현재 '케이에이치에너지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6) 갑 제9,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은 인천지방법원 2015카합680호로 피고 A이 위 법원 2014가단67705 판결과 관련하여 H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999,000원임의 확정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 H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소송비용액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하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